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국정과제 발표 후속 논의 :

# 사회연대경제 실행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대화

2025. 8. 20.  13:30-16:30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공동주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후원 농협대학교 희망농업협동포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협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목차

## 2025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진행순서

### 축사·환영사

<b>정태호</b>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경제 TF장	
<b>최우성</b>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4
<b>김현대</b>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 발제

<b>장종익</b>	한신대 교수(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6
------------	------------------------------------	---

### 이슈토론

좌장. **이원재** LAB2050 이사장·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b>배정미</b>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15
<b>전일주</b>	임팩트얼라이언스 기획운영팀장	21
<b>박진영</b>	전국광역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정책위원	24
<b>김영식</b>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29
<b>김대훈</b>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33
<b>손 찬</b>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	51
<b>강민수</b>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56
<b>윤은석</b>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60
<b>서용식</b>	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65

# 국정과제 발표 후속 논의:

## 사회연대경제 실행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대화

13:30 - 13:50	개회식	축사	<b>정태호</b>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경제 TF장
		환영사	<b>최우성</b>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b>김현대</b>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13:50 - 14:10	TF결과보고	발제	<b>장종익</b>	한신대 교수(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14:10 - 16:30	이슈 토론	진행	<b>이원재</b>	랩2050 이사장 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패널 (단체명 가나다순)	<b>배정미</b>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b>전일주</b>	임팩트얼라이언스 기획운영팀장
			<b>박진영</b>	전국광역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정책위원
			<b>김영식</b>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b>김대훈</b>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b>손 찬</b>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
			<b>강민수</b>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b>윤은석</b>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b>서용식</b>	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축사·환영사

**축 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경제 TF장

**환영사** 최우성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김현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발 제**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과제**

**장종익**

한신대 교수(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2025. 8. 20.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과제

장종익  
(한신대 교수, 전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 차 례

- 사회적경제 TF 설치 배경
- 사회적경제 TF 운용 구조와 방식
- 사회적경제 국정과제의 목적과 방향
- 사회적경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혁신과 성장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사회연대경제 TF 설치 배경

-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의 돌봄, 주거, 저성장과 고용의 위기, 기후위기, 지역 소멸 등의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부각(UN, OECD, EU, ILO 등의 권고)
- 기본사회의 실현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고, 사회연대경제는 기본돌봄, 기본교육, 기본주거, 기본교통 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설정 (국민의 기본권의 실현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
- 사회연대경제관련 국정과제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 농식품부, 환경부, 금융위, 조달청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서 검토되고 실현될 필요에 따라 분과간 협업방식의 TF 설치

## 사회연대경제 TF 운용 구조와 방식

- 기획분과, 경제1·경제2·사회1·사회2 등 기획위원4명, 전문위원 11명 등 15명으로 구성
- 4회에 걸친 전체 회의 및 다수의 실무 회의 개최
- 10개 부처로부터의 업무 보고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 10여 개 사회연대경제 당사자조직 대표 등과의 간담회
- AI웍스 등 소셜벤처 현장 방문 간담회

##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의 목적과 방향

### • 목적

-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방안 수립

### • 방향

- 국민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의 확대
- 사회연대경제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확립

##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1)

### 1. 사회연대경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현장과 지역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인증, 지정, 법인격 등 지원제도별 접근법에서 돌봄·주거, 에너지전환, 지역재생, 고용증진 등 사회목적별 접근법을 채택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향상시키고 사연경기업간 협력과 연대를 제고

### 2. 사회연대금융의 확대와 활성화

-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연대금융 확대
- 민간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활성화
- 상호금융기관의 사회연대금융 지원 확대
- 사회적 가치 평가 활성화 등 사회적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등

##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2)

### 3. 사회연대경제 경영지원정책을 '성장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

- 설립 촉진 중심의 이전 사회적경제 정책은 인재 유입 지체와 성장 한계 노출
- 통합돌봄, 1차의료, 사회주택, 지역재생, 재생에너지, 모두를 위한 AI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서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 추진
- 공공조달에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확대
- 시장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

### 4.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 명확화, 사회목적법인 도입 등 정비방안 추진

## 사회연대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방향과 과제(1)

### 방향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좁은 틀과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안경제로 확장하여 시민체감형/시민참여형 사회연대경제로의 질적 발전

### 쟁점 1. 사회적기업 정책의 혁신 과제

- 1) 설립 지원 중심, 성장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강화 정책의 미비
- 2) 획일적인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중심의 예산(55세 고령자 vs. 중증 발달장애인)
- 3)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와 인증제도의 한계, 사회목적법인 도입의 필요성

### 쟁점 2.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

- 일반협동조합의 영리법인 규정에서 상호성법인으로 전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세제 및 지원정책 도입, 정체성 유지를 위한 실효성 높은 감독체제의 도입

## 사회연대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방향과 과제(2)

### 쟁점 3. 정부 주도에서 사회연대경제연합회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

- 정부 및 자치단체 주도의 무료 설립 지원 및 경영 지원서비스 제공정책에서 미션 중심의 사회연대경제연합회 주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
- 제도 중심의 연합회에서 미션 중심의 연합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제고

- 가. 의료·돌봄공동체사회실현사회연대경제연합회: 육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형 주거, 먹거리, 이동
- 나. 주거공동체실현사회연대경제연합회: 사회주택, 협동조합 주택 등
- 다. 노동통합형 사회연대경제연합회: 발달장애인,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등
- 라. 일의 질향상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플랫폼협동조합
- 마. 시민참여형에너지전환 사회연대경제연합회: 재생에너지의 생산, 유통, 에너지절감 건축/소비, 리사이클링, 친환경 모빌리티 등
- 바. 지역공동체증진사회연대경제연합회: 로컬푸드, 사회적농업, 생협, 문화 등

## 사회연대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방향과 과제(3)

### 쟁점 4. 중간지원조직의 혁신과제

- 사회연대경제간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무료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미션 중심의 연합조직과의 협력 방식으로 전환
- 서비스 수혜자 참여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전환

### 쟁점 5. 시민참여형 사회연대금융실험 등 금융생태계 조성

- 시민이 사회적 예금자와 사회적 투자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사회연대경제주체들이 업종과 지역을 넘어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중개기관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독일의 GLS뱅크실험('73),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특화실험(Credit Cooperatif, 1893) 및 윤리은행협동조합(La NEF, '88), 퀘벡의 데잘맹연대경제실험(Caisse d'économie soliaire, '71), 미국의 재생에너지실험(Clean energy CU, '17)
- 사회적가치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금융중개기관의 설립 허용으로 '사회적 상속'이 가능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투자 촉진, 사회적예금 및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정부의 모니터링에서 시민의 모니터링으로 전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이슈 토론

- |            |            |                                      |
|------------|------------|--------------------------------------|
| <b>좌 장</b> | <b>이원재</b> | LAB2050 이사장·<br>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
| <b>토 론</b> | <b>배정미</b>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            | <b>전일주</b> | 임팩트얼라이언스 기획운영팀장                      |
|            | <b>박진영</b> |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정책위원                |
|            | <b>김영식</b>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            | <b>김대훈</b>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
|            | <b>손 찬</b> |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                        |
|            | <b>강민수</b> |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
|            | <b>윤은석</b>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
|            | <b>서용식</b> | 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좌 장

**이원재**

LAB2050 이사장·  
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토론 1

**배정미**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제안

2025.8.20(수)

**KNSE**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배정미

## 우리 단체의 핵심 정책 아젠다

### 1. 핵심정책 아젠다: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2.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 1) 출범 배경

- 정부와의 정책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기업 육성 네트워크 필요 → **민관협력 모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에 기반한 거버넌스 기구로 구성
- 2011년 11월, 공공부문 주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 모델에 기반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 · 종교계 · 재계 등 민간 영역과 정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출범
-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4항 제3호  
"업종·지역 및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2) 설립 목적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및 유관단체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및 단체의 자립 및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 (운영규정 제2조 목적)

## 우리 단체의 핵심 정책 아젠다

### 3) 조직 현황

- 상임공동대표: 고용노동부장관 + 민간대표 1인
- 공동대표단: 정부기관·시민단체·종교계·재계 등 9개 부문 29개 기관 대표
- 운영위원회: 9개 부문 46개 단체 실무
- 사무국

### 4) 사업내용: [운영규정] 제4호

-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및 연구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운동을 포함한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반 지원 및 지원연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확산
- 해외 사회적경제 및 관련 기관들과의 국제교류·협력
- 위 각 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모금
- 그 밖에 이 네트워크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3

## 우리 단체의 핵심 정책 아젠다

### 5) 세부사업 진행내용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개척	국내외교류·협력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운동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지자체 운영정책 비교 연구</li> <li>-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단위 실태조사(2017년~2018년)</li> <li>□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2018년)</li> <li>□ 지자체 사회적경제 비교 및 평가</li> <li>- 2019부터~ 지방자체단체 사회적경제정책평가 공모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개 시·도 네트워크 지원</li> <li>□ 리더 포럼</li> <li>□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연계 현황조사</li> <li>□ 모금</li> <li>-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개선 캠페인</li> <li>- 윤리적소비캠페인·공모전/36.5 캠페인/Buy Social 캠페인</li> <li>□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 촉진 지역 행사</li> <li>□ 공공구매 활성화/모니터링</li> <li>□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작은)설명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국제포럼공동기획 및 참여</li> <li>- 아시아미래포럼/사회적경제정책포럼 등</li> <li>□ 해외선진사례 학습조직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양성민관TF운영</li> <li>□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14년~'19)</li> <li>□ 착한소비 청년 기자단 운영</li> <li>□ 전국·지역단위사회적경제기업 홍보</li> <li>□ 윤리적소비 / Buy Social 교육·홍보</li> </ul>

4

## 정책 집행 거버넌스 체계 마련(안)

### 2. 정책 집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한 제안

#### 1) 지금 이시기에!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는 더욱 필요해졌다

-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 유의미할 때 속도 조절 가능
- 현시기 당면과제 중 우선순위인 지역소멸, 일자리 창출(청년, 베이비붐 시대 조기퇴직자)을 위한 실제적이고 우호적인 환경 조성 필요
- 2025년 현재 대략 3만 3천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중 (사회적기업 3,762개이상, 협동조합 18,000개이상, 마을기업 약 2,500개, 자활기업 약 1,200개 이상 등)
- 2022년 말 이후 국민에게 체감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필요성과 지원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졌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필요
- 따라서 NPO, 기업CSR, 노조, 학교 및 종교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공간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결합되고, 효능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활동이 강화될 필요

5

## 정책 집행 거버넌스 체계 마련(안)

### 2) 역할 수행 범위

- 사회적경제 정책 견인 주체로서의 민간 네트워크
  - 정부 정책 및 실행체계 감시
- 사회연대경제의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가능
  - 지역사회 참여형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 자율 규제 강화
  -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 공공지출의 사회적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의 통합과 규율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 책임성 투명성 제고는 물론 사회적경제기업활동의 지원, 보호된 물품과 자본시장의 제공, 그리고 창조적 기업가의 양성 위한 체계 마련
-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또는 문제 해결 기여도 기반의 성과 측정 모델 제안 및 운영 가능

6

## 정책 집행 거버넌스 체계 마련(안)

### 3) 정책 집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 법적 주체로서의 명문화 필요
  - 기본법 내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정의와 역할을 명시
  - 정책 실행 파트너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 정책 수립 및 평가 참여
- 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나 협의체에 참여 보장



민간 네트워크는 **사회적가치 혁신의 허브로서 역할 수행**  
(한단계 진전된 새로운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활동!)

7

## 정책 집행 거버넌스 체계 마련(안)

### 3) 정책 집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 법적 주체로서의 명문화 필요
  - 기본법 내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정의와 역할을 명시
  - 정책 실행 파트너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 정책 수립 및 평가 참여
- 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나 협의체에 참여 보장



민간 네트워크는 **사회적가치 혁신의 허브로서 역할 수행**  
(한단계 진전된 새로운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활동!)

7

국민이 주인인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토론 2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기획운영팀장

## 발제1 : 사회연대경제의 두 기둥 세우기

사회연대경제는 굉장히 큰 개념이고 철학입니다.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체계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지면서, 불필요한 행정적 구분을 통해 칸막이를 만들고, 개념의 오해와 편의성을 쫓으며 지원방식을 뒤엎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와 혼란 때문에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연대경제 안에 큰 두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전망 구축’과 ‘사회문제 해결책 보급’입니다. 한쪽에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와 삶의 안전망을 만드는 활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책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안에서 이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 무엇이 핵심 목표인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많이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소상공인지원정책과 벤처육성정책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구분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 두 가지 큰 목표를 중심으로 다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철학 위에 세워진 소상공인지원과 벤처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가 일반경제와 제도적 구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기존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성격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 큰 목표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예로 들면:

연대와 협력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는 공공성 추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컨설팅·판로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직은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제조직에게는 사업방식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사회연대경제는 투자를 중심으로 지원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류금융에서 임팩트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와 연결하여

기술과 투자가 융합된 새로운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각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형식 위에서 정책집행 체계만 통합하는 방식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재구성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경제까지 대상으로 하는 더 큰 정책이 되어야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예산과 정치적인 요구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방향성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제2 : 민간 거버넌스 환경 개선**

비서관, 주무부처, 위원회 등 모두 중요하다라는 전제에서 빠진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하자면, 현재 정책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생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에 비해 민간 생태계의 힘과 역량이 너무 약합니다.

정부 행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분절된 행정과 정보를 유연하게 연결하고 흠어진 논의를 모으는 것은 원래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다른 행정조직을 만들어 해결하려고 한다면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네트워크가 약한 이유는 명확하게 비용의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교류와 연구를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생태계 대부분 영세한 상황이라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본법에 근거하여 생태계를 지원하는 조직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기금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복권기금이 1년에 약 2조 조성됩니다. 기존에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연 20억(0.1%) 정도가 쓰였습니다. (진흥원의 '소셜캠퍼스온'이라는 공간지원 사업) 사회연대경제를 위해 0.5%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0억씩 5년 500억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운용을 통해 매년 10-15억을 마련해 민간 네트워크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제안해봅니다.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토론 3

**박진영**

전국광역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정책위원

## 사회연대경제 성장촉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방향(안)

### 이재명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성장촉진의 방향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 사회적가치의 체감도를 높여야
  -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든든한 주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주택 확산, 소멸지역 대응, 고용증진을 위한 중요한 주체 및 전략과 수단의 역할을 부여
- 수도권 일극화를 해결, 지방시대 지역의 역량을 강화
  - 수도권 일극화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즉 지역에 기회를 늘리고 지역 주체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지방의 생존 전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주민들 일상생활의 증진과 필요 서비스가 중심이고,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아, 지역의 위기(소멸지역)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적 주체로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영역임.

###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의 당면과제 및 추진 방향

- 통합적(전국-지역) 전달체계를 구축, 신뢰 회복, 새로운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의 주류화 정책
  - (미션과 업종중심 전달체계 구축)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문-지역 간 연대와 협의체를 넘어 업종과 미션 중심의 새로운 연대체를 구축, 중앙-지역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필요
  - (신뢰 회복) 전달체계의 핵심은 현장(기업 및 당사자)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지원조직, 그리고 공공조직간 신뢰 관계의 회복과 공통의 지향점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생태계 구축의 투트랙 전략 필요) 전국단위 에너지, 돌봄, 사회주택, 소멸지역 대응, 사회적 금융 등 전국적 네트워크와 사업전략, 부처별 지원 정책 연계가 필요(산업적 생태계 구축), 광역시·도내 기업발굴(창업), 가치사슬 내 연계, 거버넌스 구축(광역시

도내 실·국 단위), 혁신 의지를 창출해내는 네트워크 간 상호협력 거버넌스(지역생태계 구축)이 필요

-**(기본사회 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주류화 정책에 대한 설계 필요, 사회연대경제 전략이 도시의 돌봄 정책, 도시의 RE-100 전략, 도시의 주거정책으로 스며들고, 소멸 지역의 새로운 경제와 사회정책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전달체계 발전 전략

### ○지방시대 : 민간주도, 지방이 중심, 중앙은 뒷받침의 역할

-수도권 일극화의 문제는 단순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몸살 현상임. 지역에 예산과 권한과 기회를 늘리는 지방분권 전략이 역대 정부 매년 슬로건에 그쳤고, 가시적 성과와 효과는 미비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는 아직 형식적 분권과 제한적인 균형발전에 머물고 있음. 사회연대경제야말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시대 정책과 전략임.

-이재명 정부에서 전달체계는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에 착근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때 구축해 놓은 전달체계(민간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진흥원이 전국에서 직접 운영)에 대한 다면적 평가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

-특히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되었던 진흥원 중심의 전국 권역센터(5개 권역) 운영의 효과성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전략과 혁신 방안 속에 전달체계\*가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반드시 필요

\*최근 화자 되는 담론은 진흥원(공공기관) 중심으로 6대 권역센터(서울,경기,대전,대구,부산,광주)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머지 13개소 지역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체제임(6+13체계)

-사회연대경제의 중요한 주체는 민간 영역임. 전달체계도 민간의 역할과 민간지원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함. 중앙부처 내 지방 관서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방정부와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음.

-또한, 전 세계 우수한 사회연대경제의 모델과 사례는 모두 도시 단위로 볼 수 있음 (특정한 지역의 문화·민족·역사적 맥락 속에 우수한 도시 모델이 발굴).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갖고, 자치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민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족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앙의 뒷받침 역할을 찾을 필요

#### ○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지역-산업) 구축을 위한 전략

-문제해결 영역은 상당한 학습과 경험, 구체적인 제도지원과 자원과 자금이 필요한 영역임. 또한, 관련 부처가 국토부, 산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다양한 부처와 협의 및 협상이 필요한 영역

-**(산업적 생태계 구축)** 각 업종 및 의제별 해결을 위해서는 다부처와의 제도협의 및 대응, 사업계획 수립 및 전략지원, 자원 및 자금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초광역적인 업무 범위와 전

#### ○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사회 정책(도시정책)으로서 주류화 정책을 추진

-기본사회 서비스는 시민 생활의 돌봄-고용-주거-에너지 등의 필수재 영역이고, 각 분야는 도시 단위의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정책영역임. 결과적으로 각 정책별 사회연대경제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주류화 정책이 필요

-통합돌봄의 공공서비스로서 대표기관인 사회연대경제조직(의료사협, 돌봄기관), 시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이 도시 RE-100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취약계층 고용 및 일할 기회를 함께 누리는 사회적기업, 소멸지역 청년들의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협동조합 등의 역할이 필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각 실-국별로 뿌리내릴(embedded) 수 있는 전략을 지향, 도시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촉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비서관제 복원이 필요

### ○ 중앙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 중앙부처와 현장은 중앙정부의 분명한 정책 의지와 방향이 있고, 현장의 상당한 전문성과 성과가 있을 때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됨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경제 TF가 이재명 정부의 선명한 정책 의지와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 정책과 실천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진영이 움직여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컨트롤타워가 필요
-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분명한 정책 방향이 세워지면 국지방비 매칭을 비롯해 굉장히 능동적으로 역할을 진행해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임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 구축 및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 10년이상 체류(계류)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관전문가들이 모여 중요한 정책 방향과 정책운영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라도 사회연대경제 비서관제도가 필수적 요소임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토론 4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사회연대경제 정책 실행체계 구축 - 지방정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김 영 식

2025. 8. 20.

한겨레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1. 지방정부협의회회의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목표

-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 입법 및 제도개선, 관계부처의 적극적 정책 개입이 시급히 필요
  - 그동안 정부(&국회)의 숙제였는데 안 한 과제들, 과거 정부에서 하기로 약속하고 추진하지 않은 과제들의 완수
  - 잘해오다가 뒤집은 정책들의 복원
- 새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향과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복원 및 강화, 실질적인 지역순환경제 실천, 사회적 경제의 주류화 등을 목표로 설정
- 2025년 9월 4일 협의회 7기 출범식 & 포럼에서 더 상세하게 공유예정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16:00)

## 2. 지방정부협의회회의 2025년 주요 정책의제

### 1. 사회적 경제 기본법 2025년 연내 통과 및 관계 법령 제·개정 신속 완료

- 2026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환경 조성

### 2. 중앙정부내 사회적 경제 분야 전담 조직 재건 및 지원체계 개편

- 주무부처에 최소 과 단위, 가능하면 국 단위 신설 필요 (예: 과거 기획재정부 사회적 경제과)
- 사회적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직제 복원 (예: 과거 청와대내 사회적경제비서관실)
- 중앙정부 내 전담조직: 광역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 사업과 조직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의 개편과 연계 가능

## 2. 지방정부협의회회의 2025년 주요 정책의제(계속)

### 3.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자원 기여(출연 등)

- 도매기금 확대와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은 지자체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의 마중물

### 4. 조직형식 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 개념 재정의

-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일자리 창출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적극적 수용 (기후대응, 에너지 전환, 돌봄, 주거/주택, 균형발전 등)

### 5.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 혁파 추진

-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참여기회 확대 및 금융, 공간 등 인프라 접근성 강화

### 3.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생각해볼 이슈들

-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
  -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
- '머리' 뿐만 아니라 '손발'이 될 지원체계의 구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정부 사례를 주목할 필요
  - 중앙-광역-지방 간 역할 분담과 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
- 거버넌스는 참여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 상호존중, 그리고 인내가 필요
  - 사회적 경제 현장이 최대한 공통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우리 편'을 만들어 내는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노력이 절실
  - 정치적 영향력은 거버넌스의 지속성에 영향을 줌.



**올해는 꼭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감사합니다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youngkim@ssegov.org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토론 5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정책포럼의 주요 이슈

#### 이슈1. 정책집행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신설 전담부처(국장급 이상) 및 현장과 연계된 정책위원회 구성 등
- ▶ 범부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 이슈2.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

- ▶ 현장과 연계된 워킹그룹 구성 방안
- ▶ 민관 공동 정책집행 기구의 필요성 및 사례 비교
- ▶ 농촌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모델 및 거버넌스 방안
- ▶ 현장 중심 실질적 참여 기반의 정책 집행 구조 확립 모색

#### 이슈3.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한 거버넌스 법제화
- ▶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시스템

### 거버넌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조속한 제정과 거버넌스

#### 1. 거버넌스

- 알다시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활동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산업 분야별로 볼 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보험, 금융업을 제외하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 (사실은 보험과 금융 분야의 사업도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원 체계, 관리감독체계, 기업정책, 산업정책의 측면에 있어 주무부처 단독의 역할로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소관하는 정부 부처에 관리 감독의 역할이 위임/위탁되어 있다. (예,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신고 수리 및 인가 등의 관리 감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 분야를 소관하는 정부 부처)

- 협동조합기본법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옹혜인 의원 대표 발의안, 윤희중 의원 대표발의안)은 공통적으로 주무부처가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관 정부 부처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포럼의 주요 이슈인 범부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법제화, 지속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시스템에서 있어서는 국회에 제출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면 우선은 거버넌스의 외형은 갖추게 될 것이다.

## 2. 기존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와 개선방향

- 관건은 거버넌스로서의 위원회 구조의 대표성, 실효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첫 번째로 그간 경험한 각종 위원회의 문제를 되새겨볼 때 위원회 구성에서의 임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주무부처가 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는데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을 제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천되고 참여하게 되는지 그 기준,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전문가 위원의 구성도 대체로 그러하다. 이렇게 참여한 위원들의 역할도 매우 제한된다.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미흡하다.
-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의제 선정과정의 문제가 있다. 제도개선과제는 누적되고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위한 제안이 제출되어도 위원회의 의제가 되지 못한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기본계획, 실태조사의 실행계획을 심의하거나 완성된

계획을 심의 의결해 확정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방식의 위원회 운영으로는 현장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세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위원회의 의제 의제에 대한 논의결과 후속 조치에 대한 사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원의 구성 의안의 내용 회의록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를 하며 그 구성이 사회연대경제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제를 선정하고 다루며, 어떻게 논의가 되었으며,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 집행, 개선되고 있는가를 거버넌스에 관여되어 있는 주체들과 공유하면서 공론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행의 거버넌스로서의 위원회의 구조와 실상은 매우 형식적인 체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고 위원회(중앙정부차원의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지자체 단위의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이런 문제,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의 거버넌스가 작동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관건은 거버넌스로서의 위원회 구조의 대표성 실효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관련하여 현재 발의된 두 개의 법안 중 윤호중안은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설치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직제의 부활 필요성

- 앞선 논의와 같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이제 대부분의 사회,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러 정부부처의 소관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금융이나 보험업 등을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만, 실제 사회연대경제분야에는 금융,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도 다수 존재한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관계하는 정부부처도 거의 모든 부처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정부부처의 정책과 다양하게 연계해 정책 사업을 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관된 정책의 기조를 형성하고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민-관협력 민-민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처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조정,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직제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 **협동조합부문의 정책이슈와 지원체계의 재구축에 대한 의견**

**: 별첨자료 참조**

## (별첨)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협동조합 진흥체계에 대한 의견

전국협동조합협의회(2025.8.)

### 1.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비교)

실태조사 항목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0년 기준, 2022년 발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2년 기준, 2024년 발표)	증감
설립된 협동조합	19,429개	23,892개	23% 증
운영중 협동조합	8,926개	10,976개	23% 증
조합원	493,004명	622,410명	26% 증
종사자	133,290명	189,053명	42% 증
고용	평균 5.4명	평균 6.8명(총73,992명)	26% 증
자산	평균 2억 4,970만원	평균 3억 4,739만원	39% 증
자본	평균 6,060만원	평균 1억 1,227만원	85% 증
출자금	평균 4,763만원	평균 5,382만원	13% 증
부채	평균 1억 8,460만원	평균 2억 3,512만원	27% 증
매출액	평균 2억 9,512만원	평균 3억 7,470만원	27% 증
당기손익	평균 (-)433만원	평균 (+)118만원	흑자전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24.5.17.)를 토대로 재구성

-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23,892개로 2020년(19,429개)에 비해 23.0%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운영 중인 조합은 10,976개로 2020년(8,926개) 대비 23.0% 증가함.
- 협동조합의 조합당 평균 자본은 1억 1,227만원, 매출액은 3억 7,470만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5,167만원, 7,958만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8만원으로 2020년 적자(△433만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음.
- 조합원은 총 622,410명, 임금근로자는 73,992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6.2%, 54.4% 증가함.
- 조합원들이 협동의 힘으로 만들어낸 협동조합의 자산은 2020년 4억 4,970만원에서 2022년 3억 4,739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증가함.

- 부채(2020년 1억 8,460만원 → 2022년 2억 3,512만원)도 증가했는데 자산, 자본의 증가에 비해 부채의 증가 규모가 작은 점도 고무적인 변화임.
- 2022년과 2024년 실태조사 사이의 변화를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협동조합의 저변이 넓어지고 확산하고 있는 점뿐 아니라 협동조합이 내실 있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임. 지역사회 공동의 부로 기능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산이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고 매출, 손익 등의 경영실적도 개선, 내실화되고 있음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다른 기업 유형과 비교 시 협동조합은 고용창출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임.
-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10억원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평균 3.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매우 훌륭한 정책성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협동조합은 조직 특성상 영리기업과 달리 외부 자본투자를 받을 방법이 없고 대규모 정책적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스스로의 자조와 협동에 근거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2년과 2024년 실태조사 사이 2년간 26,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협동조합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음. (2020년 데이터 기준 4만 8천여명에서 2022년 데이터 기준 7만 4천여명으로 2만 6천명 순증가)
- 기획재정부의 1년 협동조합 정책 예산 75억 원(2023년 예산 기준)을 협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교육, 창업, 판로지원 및 중간지원 등의 간접지원)이자 협동조합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할 때 벤처기업의 투자 대비 고용창출 성과에 비해 무려 500배에 달하는 정책효과를 전국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이같은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2024년, 2025년 연속해서 협동조합 예산을 90% 삭감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체계의 근간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너뜨렸음.
- 지난 십여 년간 협동조합 생태계가 진화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민관협력 기반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붕괴시킨 것 역시 매우 큰 정책적 오류이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임.
- 그 여파와 혼란 부담은 고스란히 일선의 협동조합들,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에 전가되고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임.

## 2.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을 통해 도출된 협동조합 관련 법률 정비 과제

### 1) 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2024년 협동조합 미래포럼에서 도출한 과제

- 2024년 추진된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에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했음.
- 아래의 과제를 도출함에 주목한 점은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활로를 열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비롯해 세법 등 연관법률을 일관되게 정비하자는 것이었음.
- 세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건실하게 구축하고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협동조합의 상호성과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했음.

연번	구분	내용	해당 법령
1	활로	공동사업 지원-개발	기본법 제73조
2	활로	통합돌봄의 필요에 발맞춘 협동조합 역할 확대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3	활로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소득세법 제129조,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4	정체성(생태계)	협동조합 조직변경/출자금 변동에 대한 과세문제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5, 제57조의2
5	정체성(생태계)	신협 타법인 출자 허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
6	정체성(민주)	협동조합 의결권 행사 개선(서면투표, 전자투표)	기본법 제23조, 상법 제368조4
7	정체성(상호)	사회적협동조합 비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8	정체성(상호)	자조적 안전망을 위한 협동조합 공제사업 개선	기본법 제94조
9	정체성(연대)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원) 확대	기본법 제73조
10	정체성	협동조합 영리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	

\*출처: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 제도개선분과 결과보고서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2210646	<p>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p> <p>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 확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가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p> <p>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주기 변경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 신설: 협동조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3년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매년 과세정보, 피보험자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p> <p>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 제한: 협동조합의 상호성을 증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p>	차규근의원	2025-06-02
2208769	<p>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p> <p>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p> <p>나. 합병과 분할, 해산 등에 관해서는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의 특례를 둠</p> <p>다.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함</p> <p>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p>	용혜인의원	2025-03-10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p>마. 사회적협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금액을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p> <p>바. 우선출자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우선출자의 한도를 상향 (자기자본, 납입출자금 총액 중 큰 금액의 30/100에서 50/100 이내로 한도 상향)</p>		
2202497	<p>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p> <p>-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p> <p>-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p>	김재원 의원	2024-08-01
2202328	<p>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p> <p>-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p>	진선미 의원	2024-07-29
2202286	<p>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p> <p>-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함.</p> <p>-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p> <p>-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사항을 반영</p>	진선미 의원	2024-07-26

## 협동조합 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비고
22069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 협동조합에 대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11만 2,500원) 적용을 제외하고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건당 4만2백원, 기타항목) 적용  - 협동조합에 대해 대도시 등록면허세 종과세 적용 제외	용혜인 의원	
22069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 협동조합등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2조의5 신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57조의2제 11항 신설).	용혜인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추가입법 또는 본 개정법률안 심의 시 적용대상 확대)

## 추가 개정과제: 신용협동조합법 신협외 타법인 출자 허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실효성 제고

구분	개정이 필요한 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신협, 생협이 가입할 수 있으나 신협의 경우 타법인 출자가 허용되지 않아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결성의 실익이 없음. - 보다 강력한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취지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도 연계해 개정,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해야 함. -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신협과 협동조합 사이의 협력이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추가 심층검토 및 개선과제: 영리법인으로 일괄 간주되는 (일반)협동조합의 문제

\*2025 IYC 협동조합 학술정책 컨퍼런스 발표자료 “협동조합 2.0 시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방향 연구” 참조, 강민수·김기태·김대훈, 2025.7.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여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은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본질적으로 결사체(association)임과 동시에 사업체(enterprise)라는 이중적 성격과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체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운용 측면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그 목적이나 동기의 공익성과 선의와 관계없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출자금은 조합원 출자로 명시되어 있어 비조합원에게 출자를 허용하거나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이는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려는 흐름과도 배치되는 규제다.
- 만일 비조합원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출자에 대한 증서를 ‘출자증권’으로 간주할 경우 이는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 복잡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며, 공모 규모가 커지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이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 사회문제가 다양해지고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다양한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이 출현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회계, 행정, 금융 제도는 협동조합을 영리/비영리 이분법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 활동을 둘러싼 제도 운용에 있어서 혼란과 차별을 초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반대로 영리법인에 부과되는 규제는 협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자산, 처분, 배당 잉여금 분배와 관련한 규정도 기존의 영리/비영리 구분체계 내에서는 제대로 설명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다.  
\*관련하여 농협, 수협, 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개별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하는 (일반)협동조합과 운영구조, 잉여금의 배당, 청산 시 잔여재산의 배분 등에 있어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소유, 이용기업이라는 특질을 반영한 법제도적 인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일괄 간주하고 있으며 일체의 조세감면 등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협동조합을 기존의 영리/비영리 이분법에서 벗어나 ‘공익적 경제주체’로 간주하는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정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을 ‘공익적 기업(public interest enterprise)’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그 특성에 맞는 행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둘째, 조세 및 회계제도에서 협동조합의 혼합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조합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유보금, 적립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반 상법상 법인과는 구분되는 협동조합형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협동조합 고유의 자금 흐름과 이용자 중심의 운영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째, 행정과 금융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사회 가치 실현기업으로 간주하여 이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협동조합이 금융기관 대출, 행정 사업 참여 등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협동조합 담당 중앙부처를 통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의 영리/비영리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협동조합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법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3. 협동조합의 진흥과 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

#### 1) 협동조합 진흥체계의 재구축

**: 전문화된 협동조합 진흥체계 필요, 현재의 기형적인 체계는 절대적으로 타파해야**

-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기획재정부가 업무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과소한 규모의 협동조합지원실 조직 및 제한된 예산으로 매우 제한적인 역할, 기능, 사업만 수행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가 2만 7천여개에 달하는 상황, 국가 및 지역사회 경제에 대한 기여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 개별 협동조합, 연합조직이 성장해 성숙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진흥원을 소관부처(현재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신설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원, 광역/기초 지자체의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 지원기관 및 업종, 지역 단위 협동조합 연합조직과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핵심 기능: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적극적 제도정비,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에 따른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분야 협동조합 집중 육성,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과 공동사업의 촉진,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기술 및 금융지원 등 정책기능과 전문화된 지원기능 수행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및 사회연대경제원과의 관계: 향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연대경제원이 신설되고 경제원이 사회연대경제 전체를 아우르면서 협동조합 전문 진흥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굳이 협동조합진흥원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임. 그러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업무위탁, 부속적 체계로 협동조합 지원조직이 잔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는 절대적으로 타파되어야 할 것임.

## 2) 실효적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 강화

: 연합회가 협동조합 생태계의 중심으로 서도록 지원

: 창업, 교육, 공제, 공증, 기금 조성 촉진 및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

- 협동조합이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비해 탁월한 점은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이라는 가치와 지향점을 내장하고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풍부한 경험이 있다는 점임.
-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를 비롯한 해외의 규모화된 협동조합 연합조직, 한국의 성숙한 개별법 협동조합과 자생적인 발전경로를 밟아온 생협, 신협과 기본법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협동조합의 큰 잠재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향후 협동조합 진흥정책의 방향은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동반성장과 상호협력을 촉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 시기와 윤석열 정부 초기(예산 삭감 이전)에 이같은 방향의 정책이 정립되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 (연합회의 교육기능, 창업지원기능 강화로 업종/부문 협동조합 생태계가 활력을 창출하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효과 창출) 그러나 창업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교육사업도 대폭 위축되면서 이같은 생태계 조성 효과가 상실됨.

### 업종 협동조합연합회

- 업종/부문 연합회는 수평적 결합을 통해 동종의 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들이 더욱 수월하게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하게 도울 수 있으며 비용 절감, 공동사업을 통해 보

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

- 협동조합 생태계로의 연결을 기본 전제로 하는 신규 협동조합 창업지원, 심도있고 전문화된 교육훈련, 공제사업 활성화, 자조기금 조성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업종/부문 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발전협동조합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조합원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재생에너지에 관한 인문 교양 교육, 전문기술 교육)과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면서 시민발전협동조합의 저변을 효과적으로 확대해왔음. 지역 내 발전소 부지 공동발굴, 공동사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연합회와 중심 조합이 기술지원(시공, 유지보수)을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결성과 초기 사업기반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운영 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공동구매함으로써 구매력을 기초로 보험료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나아가 스스로 공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협동으로 조성한 자원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화할 수도 있음.
- 실제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시중 보험사의 손해보험 상품을 연합회가 교섭해 단체로 가입하는데 약 300건에 이르고 매월 보험료로 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300건 중 1% 미만 수준임. 그러면 충분히 자체적인 공제를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시중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내부화할 수 있음. 준비된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 협동조합연합회**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의회, 연합회의 경우는 아직 공동사업의 개발 실천 경험이 부족하여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단계로 본격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연합회의 역할, 사업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 기반 연합조직의 경우는 지역 내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찾고 사업화하는 과정에 각별한 지원이 필요함.
-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으로는 지역 내 협동조합이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하고 행정적 애로를 크게 겪고 있는 공증(의사록 인증) 절차에 있어 연합회가 공증인 역할을 해 회원조합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합회의 역할도 강화해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복지사협, 대학생협, 학교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연합회가 공증인의 역할을 하고 회원조합의 비용부담과 행정비

용을 절감하고 있음.

-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합회에 지역 내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공시지원, 기초 교육훈련 본부의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면 연합회의 위상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업종이 혼종되어 있는 지역 기반 연합회의 회원구성을 장점으로 전환해 연관산업 사이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순환경제의 중심조직(앵커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 자조기금을 조성해 상호금융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스마트협동조합이 기금을 조성해 조합원 용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도 '단비기금'을 조성해 지역 내 회원조합에 자금공급을 하고 있음. 이런 자조기금을 규모화하는데 기성의 사회적금융 조직과 협력하고 사회공헌자금 등이 매칭되면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런 자구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단위 연합조직은 연합회 이전 단계인 협의회 단계에 많이 머물고 있음. 연합회로의 전환을 추진, 공신력을 확보해가면서 공증인의 역할, 신규 진입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지역 내 협동조합 창업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연합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지역순환경제의 중심 조직으로 연합회가 진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이 중요함.

### 3)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예산의 복구 및 증액

: 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투자(전문인력 양성, 지원)

: 연합조직과 전문화된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신규창업 및 교육훈련사업 추진

- 지난 년 연속된 비상식적 예산 삭감에 대해 가장 복구가 시급한 예산항목으로 창업 지원사업과 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쪼는 의견이 많음. 또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에서도 창업지원과 교육훈련사업이 가장 효과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협동조합 교육지원사업 예산: 맞춤형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 경영공시 및 총회교육, 공무원 교육 등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지원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필수적으로 편성, 증액되어야 할 것임.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3.3.)

- (협동조합 대상 역량제고 프로그램 강화) 업종별 특화교육과정 확대('22년 20개 → '25년 30개)를 통해 협동조합 직원 전문성 제고
-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으로 연합회의 역할 강화) 연합회가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단계별 지원 역할 강화, 연합회 주관 교육 신설 등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위와 같이 수립했으나 정작 2024년 교육분야 사업 예산은 82.7% 삭감(법적 의무와 관련된 경영공시 등의 교육만 겨우 잔존). 2025년에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 등 협동조합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지원 정책 사업 중 가장 중요하고 필요성, 참여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임에도 해당 사업 전면 폐지(협동조합 지원사업 중 매년 2천명 가량 참여하는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 정책 만족도 1위)

-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예산: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은 협동조합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모델이 확산하는데 효과성이 매우 큰 사업으로 필수 편성하고 그 규모도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3.3.)

- 유형별·분야별 지원
  - 의료·학교·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합회 등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해당 분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 지원을 담당토록 유도
- 성장단계별 지원
  - 창업 후 사후관리 강화, 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후 정착 지원

\*유형별, 분야별 연합회가 해당 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나아가 창업 후 타부처 정책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정작 2024년, 2025년 예산은 전액 삭감

\*전 경제부총리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타 부처 유관사업이 있어 삭감”했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타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예산도 전액 삭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5년 생존율은 75%를 상회, 유사 청년창업 지원사업보다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탁월(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창업지원사업 정책효과 연구결과)

\*매년 100개의 협동조합 창업팀을 선발 지원함으로써 75% 이상 설립에 성공(연합회 등 성숙된 협동조합 생태계 속에서 준비된 창업을 지원, 조기 정착)

- 협동조합의 신규 창업지원과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 편성할 때 창업지원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할 중추로서 지역/업종 연합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문재인 정부 시기 및 윤석열 정부 초기(예산 삭감 이전)까지는 이러한 기조로 창업지원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효과도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반을 조성한 선배 협동조합의 조력과 지역/업종 연합회의 울타리 안에서 신규 창업지원사업, 교육훈련 사업이 이뤄지면 지속적인 관계망 속에서 연대,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업종 협동조합 부문의 경쟁력도 제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
- 새 정부에서는 연합조직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창업 및 교육훈련 등 핵심적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람. 행정적인 전달체계를 넘어 실질의 임팩트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 (협동조합)진흥기관 - 지자체 광역/기초사회연대경제지원기관-일선 지역/업종 협동조합 연합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역할분담 및 자원의 배분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함.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토 론 6

손 찬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

## 마을기업 현황과 제언

### 1. 현황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1년 자립형 공동체 사업으로 시작해 201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목적사업임. 2023년 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임.

마을기업은 전국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지정에서 재지정, 고도화, 자립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기업 창업에서부터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마을기업지원사업 시행 이후 근 15년이 도래한 지금,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2025년 7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마을기업은 법제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정비를 통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함.

### 2. 정책과제 제언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함.

아젠다	주요내용
제도적 기반 강화	법제화, 안정적 지원, 정책 일관성 확보
지속가능한 자립·성장	성과지표 고도화, 수익모델 다변화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참여확대	인구소멸 지역 지원강화, 청년마을기업 활성화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 거버넌스 강화, 네트워크 확장
현장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리더쉽 및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가치과 공공성 제고	공공구매 확대, 사회문제해결 플랫폼

### **첫째, 제도적 기반 강화**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범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지침에 의해 운영함. 운영의 불안정성이 있었으며 이제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확보를 통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중·장기 정책 일관성 확보로 마을기업의 지속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둘째, 지속가능한 자립·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및 시스템 정비**

- 단순 매출, 고용지표를 넘어, 지역 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회복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평가하는 공동체적 지표 도입으로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지역에서의 책임성을 강화
- 온라인, 수출 포함한 판로개척과 공공조달 시장 확대, 민간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모델 다변화를 통한 성장과 자립의 견인이 필요

### **셋째,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참여 확대**

- 국가의 당면과제인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을기업의 적극적 활용. 마을기업의 설립 지원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동력원으로서의 마을기업 발굴과 모델 확산
- 마을기업의 청년고용과 청년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거점 역할 수행  
(농어촌·소멸위기 지역의 마을기업 우대정책 적용.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 창업·취업 연계지원)

### **넷째,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지방정부·마을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수평적 민관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마을기업 간의, 타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의 업종별, 지역별, 미션별 연계를 통한 협동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교류회 및 포럼을 통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의 플랫폼을 통한 공동마케팅 및 자원공유를 통한 시너지 확대 기대

### **다섯째, 현장 역량 강화**

-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마을기업 눈높이’에 맞춰 수행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전문성 강화, 특히 지역자원 및 유관조직,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지역 밀착형’ 중간지원기관의 존재가 매우 중요
- 회계·경영·마케팅 등 영역에서의 마을기업 운영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대표들의 기업운영 역량 강화로 현장기업들이 탄탄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 **여섯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

- 마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공공구매를 확대
- 돌봄, 환경, 에너지, 문화, 노인·청년 일자리 등 지역밀착형 문제해결을 핵심 목표로 사회문제 해결에 마을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제도적 차원의 노력

## **3.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제안**

이상에서 제안한 마을기업의 정책과제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마을기업협회 내의 민주적 참여구조와 사회연대경제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구조 안에서 의제화된다면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함.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마을기업 영역**

#### **첫째,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의 연합단체로서의 기능 강화**

- 마을기업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책 대표성, 제도화 과정 참여, 현장 대변, 교육·연대 강화의 역할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내부적 역할분담과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구성 개편
- 민주적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 규칙이 작동하는 협회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과 규칙 표준화 및 내실화

#### **둘째, 당사자 조직, 행정기관, 중간지원기관의 실무워킹 그룹 운영**

- 마을기업 당사자조직은 ‘현장과 실행의 주체’
- 지원기관은 ‘전문적 지원자’

- 행정기관은 '정책과 제도적 지원자라는 역할
- 세 주체의 협력이 곧 마을기업 생태계의 안정과 확장의 핵심으로 작동

## **사회연대경제 영역**

### **첫째,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신설**

-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부처 간 협업 조정, 정책의 일관성, 속도, 실행력 강화 필요
-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역할로서 기능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총괄적인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둘째, 민관 협력거버넌스를 위한 위원회 구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위원회 구성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토론 7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한국사회연대경제의 정책요구

### 1. 21대 대선 시 사회연대경제의 요구

-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역량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제21대 대선 과정에 정치적 참여를 결정함

#### □ 대응 과정

#### ○ 공약 개발

- 25년 1월, 대선공약 개발팀(정책위, 제도개선위, 사무국 등)을 구성, 사회연대경제와 정치참여, 대선 대응 정치방침, 대선 참여 방향 수립
- 2월, 이사회에서 사회연대경제 1차 공약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대선 대응 계획(안)” 승인 등

#### ○ 권역별 순회간담회

- 25년 3월 중 5개 권역(강원·수도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순회간담회 추진  
총 100여 명의 사회연대경제 이해관계자 참여
- 순회간담회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 채택, 사회연대경제 비서관직 부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12개 대선 정책 요구 확정

#### ○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 개최

- 2025.5.15.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전국 1,000여 명의 참여로 대회 개최

### 2. 공약 반영 여부

-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관련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 예산복원, 사회연대경제 비서관 부활 등 약속

-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집 “회복, 성장, 행복”으로 국민통합 공약집 중 사회연대경제는 ‘성장’ 정책 공약 23번째로 반영



- 현재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지난 간담회 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통합 지원체계 구축, 금융지원, 성장지원을 주요과제로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관련하여 위 계획은 향후 추진체계(실행체계)와 예산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한국사회연대경제는 8월 19일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집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 다만, 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비서관직의 부활(이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과 함께 사회연대정책을 총괄할 부처 내 국 또는 실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 한편, 9월이면 2026년 내년 예산이 국회로 넘어 올 텐데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연대경제관련 예산의 원복이 필요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물론, 법 제정과 예산은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조속히 당정 정책협의를 진행해 사회연대경제활성화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연대경제 당사자들도 위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토론 8

**윤은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2025

# 사회적기업의 공정한 성장 기회 제도개선 제안

"기업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해법"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사회적기업의 과거

### 사회적기업 법·제도 흐름 / 정책 전환 평가

	재정지원사업	정책 전달체계	사회적기업 인증 관리
법 제도 취지	일자리창출 직접지원 고용장려금제도 편입	사회적기업 육성 중심 사회적기업진흥원설치	사회적기업 순기능 전제 이익잉여금 사회환원
3차 제도정립	균특 / 지방교부금성격 지자체 기업위탁 고용장려금	사회적기업 창업육성트랙 용역사업 지원전달체계	<b>당사자조직 역할 부재</b> 사업보고서 기준 실적관리
4차 제도 전환	고용유지율 근거 비효율 성장 전환 / 전액 일몰	정쟁 / 창업육성사업 일몰 진흥원 / 지역 직영 개편	전산통합시스템 관리강화 <b>SVI측정, 과태료 처분확대</b>
평가	대안없는 예산전액삭감 지역 공적 전달체계 붕괴	직영 / 지역 지원체계 혼란 공모사업 중심 비효율	<b>SVI 법근거 부재·활용 부실</b> 지원 부재 / 인증 의무 가중

## 사회적기업 정책제안 근거

###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국정기획위원회

- 대한민국 진짜성장 "...국민 모두가 혁신과 가치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누리는 체감가능 성장" -> 사회적기업 모두가 혁신과 가치창출참여
- 5대과제 중.;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시장경제 생태계 구축'
- 일부 대기업만이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모두가 역량을 키워 **폭넓게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서 폭넓은 진짜 성장.->당사자 사회적기업참여
-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부족..금융시스템 개혁과 맞물려 생산적인 영역으로 보다 흐를 수 있는..'
- (4)중소·벤처기업 금융 활성화. (p85),

### -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SE)스타트업 간담회' 발언 중

"과거처럼 관에 의해, 정부의 경제 계획에 따라 기업을 만들고 지원해 집중 성장시키는 시대는 가버렸다. 이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씨를 뿌려 **성장하고 성공하는 시스템과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 - 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성장기반구축 23. '사회적 경제 지원으로 풀뿌리 지역경제를 조성..'
- 효과적인 지원 체계 수립을 통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부담 완화 (p156\_)

## 사회적기업 정책제안 기초

###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건

**“채계적 자원”** 보다 **“공정한 성장의 기회”**

1. 사회적가치의 공정한 보상 <사회적가치 화폐 정량화 측정 가치보상>
2. 공공시장의 공정한 경쟁 <모수 조정, 직접제조, 지역생산, 협업모델>
3. 사회적기업 이익금 중심 성장생태계 <당사자 중심 임팩트 자조금>

## 사회적기업 정책 제안

### 4 ‘사회적가치 파트너’로서 정부 역할 강화

일자리 창출을 넘어, 함께 ‘좋은 일’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로

- 사회적가치 협력 기반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도입
- 공기업-사회적기업 간 사회적가치 실현 협업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산점 확대
- 정부 우선구매 제도 내 사회적기업 협업 실적  
별도 측정 등 평가제도 개편

표 2.1.1.1.1 사회적기업 육성 강화를 위한 5대 정책 제안

[일자리 창출을 넘어, 함께 ‘좋은 일’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로]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사회적가치 협력 기반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도입  
: 공공기관·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공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성과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참여 주체 간 공정하게 배분하는 구조의 시범사업 추진. ESG 성과 등 사회적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공기업-사회적기업 간 사회적가치 실현 협업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산점 확대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기업과의 협업·협력 성과를 반영해, 협력 유인을 강화.
- 정부 우선구매 제도 내 사회적기업 협업 예산집행 실적의 별도 측정 등 평가 제도 개편  
: 기존 단순 ‘구매실적’ 중심 평가에서 ‘사회적기업과의 공동사업 여부’ 및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를 포함한 정성 평가 체계로 개편.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법정단체 전환 필요성

-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 2. 1.>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적기업 전국 네트워크 지원체계 부재
- 사회적기업법 개정을 통해 전국단위 네트워크 재설계

## 사회적기업 전달체계 재구축 제언

###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추진 / 균특 계정 여부

- 사회적기업 외 청년,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등 확장 참여 협력형 일자리창출
- 사회문제해결에 따른 성과측정과 연단위 고용창출외 사회효용성 측정
- 지역 별 지역문제해결 상설 거버넌스 (지자체, 대학, 협의회, 시민사회 등)

### 2. 사회적기업 창업육성사업의 주요 방향 \*(당사자협의회 자조금 중심)

- 기존의 수직적 단일 전달체계 개인창업지원 아니라 오픈형 거버넌스 창업지원
- 당사자 조직 임팩트 자조금 + 상공회의소 자원협력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연계

제2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토론 9

서용식

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

## 새정부 국정과제 자활기업 정책 제안 (한국자활기업협회)

---

### 1. 현황 및 문제점

- 자활기업은 생산공동체운동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자활기업 수 감소, 저소득층 자활 축소 등 자활기업 설립·육성 활동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음.
  - 자활기업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시작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을 목표로 상호협력하여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지원 관리함.
  - 최근 신규 자활기업 창업 수가 5년 전에 비해 약 50% 이상 감소되었고, 기존 자활기업도 폐업 및 인정 취소의 증가로 자활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자립 활동이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 수급자, 저소득층 자활 촉진 위해 자활기업에 대한 체계적, 중장기적인 육성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은 지금까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중심으로 창업 이전 단계까지는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창업 후 자활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 계획이 부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미약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1개 조항(제18조)으로만 되어 있음)
  -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수급자,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 위해서는 자활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기본계획에는 실태조사, 육성목표와 정책과제, 지원체계와 인프라 구축, 예산확보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자활기업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 평가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함.

### 2. 정책과제 제안

-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을 통한 수급자,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활기업 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 집행,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새로 입법 또는 관련법 개정)

- 자활기업 설립 및 육성과정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수립해야 함.
  - 자활기업 창업 후 안정 및 도약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창업, 경영, 판로, 교육, 컨설팅, 금융, 공공기관우선구매,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을 현재의 복지부 지침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조항으로 반영되어야 함.
  - 자활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률이 낮은 자활기금이 아닌, 정부 일반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원기관은 현재의 지역자활센터와 별개로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자활기업 창업, 경영지원, 인정관리, 평가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저소득층 자활 촉진과 자활기업 활성화 위한 자활기업협회 설립 및 운영지원의 근거 필요함
  
- 수급자,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취·창업 촉진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의 자활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특례지원기간을 기업 참여후 최대 5년까지로 변경하고, 취창업자·자활기업·지원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하여 자활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함.
  
- 수급자, 저소득층 자활 촉진과 자활기업 설립·육성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미약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자활기업 육성지원법 입법 추진이 필요함.

### 3. 기대효과

-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 활성화 촉진
  - 자활기업 창업 활성화로 자활기업 연간 창업수 확대 (현재 연간 80개 창업 ⇒ 향후 연간 160개 창업)
  -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로 자활기업 폐업 감소, 5년 이내 기업수 3,000개로 양적 성장
  - 자활기업 활성화,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 성과 향상

---

## 정책집행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의견 (한국자활기업협회)

---

### 1. 문제의식

- 현재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제도적 논의와 법률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집행 거버넌스가 부재한 실정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부처 간 칸막이와 조정력 부족으로 집행력이 약화되고 있음.
- 특히 자활기업과 같이 소규모·취약계층 기반 기업은 행정 및 재정 집행 지원이 절실하지만, 이를 총괄·조정할 전담 체계가 미비함.
-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으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2. 제안 방향

- 향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집행력을 갖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삼아야 함
-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비서관, 전담부처 등)를 통해 범부처 협력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함.
- 민간 현장의 대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집행 구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정책 설계-집행-평가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실행 구조를 마련해야 함.

### 3. 구체 방안

-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신설(복원)
  - 대통령실 또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비서관을 설치하여 범부처 정책 조정 및 실행을 총괄.
  - 비서관은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의 조율·집행·평가를 책임지는 중추 역할 수행.
- 전담부처 또는 위원회 설치
  - 현행 부처 간 분산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처 또는 범정부 위원회 설치 필요.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 분야별 정책이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민관 공동 워킹그룹 운영

- 정책 집행 과정에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워킹그룹 구성.(사회연대경제연대회의를 활용할 수 있겠음)
- 워킹그룹은 정책 점검, 현장 의견 반영, 실행과정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안 제시의 역할을 수행.